

제47회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일시 : 2022년 9월 21일 (수) 14:00-16:0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www.nypi.re.kr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 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1
------------------------------	---

김혜자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31
---	----

김동균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김혜자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김혜자(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경비보조금 목적 및 지원범위

교육경비보조금은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단위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6에 따라 관할구역 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차별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다양하게 또는 광의적으로 해석되면서 「유아교육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교육투자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표1> 교육경비 보조의 법적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u>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u>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u>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u>(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u> 보조한다. <개정 2010.3.24>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u>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운영에 드는 경비를</u>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사립유치원에 지원</u>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u>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u>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6. 12>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지원 예산에는 법정부담금, 비법정부담금, 학교용지매입비, 학교급식보조, 교육경비보조금 등이 있다. 이 중 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액을 추출하고, 세입예산액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을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지원 예산은 꾸준히 증가추세로 확인되며,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은 2016년 대비 2020년 약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관련지원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2016년 7.1%에서 2020년 7.8%로 0.7%p 증가했다.

<표2> 일반자치단체의 교육관련지원 예산 현황(2016-2020)

(단위: 억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경비보조금(A)	7,668	8,131	9,102	10,301	10,809
교육관련지원예산(B)	107,844	116,128	127,799	132,869	138,215
세입예산액(C)	265,434	283,761	310,161	341,577	380,242
(A/B)	7.1	7.0	7.1	7.8	7.8
(B/C)	4.1	4.1	4.1	3.9	3.6
(A/C)	0.3	0.3	0.3	0.3	0.3

출처: 김혜자(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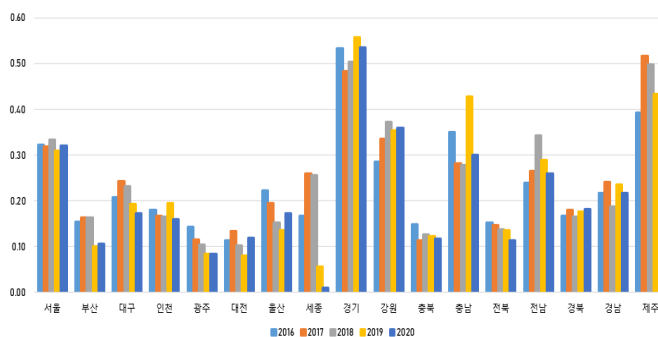
1)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2.9.14.)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시지역의 경우 세입예산 대비 교육관련지원예산 비중이 높지만 교육관련지원예산 중 교육경비보조금의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반면 도지역은 세입예산 대비 교육관련지원예산 비중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교육관련지원예산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된다(김혜자, 2021)²⁾.

<표3> 교육관련지원예산 및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교육관련지원예산(%)					교육관련지원예산/세입예산(%)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4.7	4.5	4.8	5.0	5.1	6.9	7.1	6.9	6.2	6.3
부산	3.8	4.0	4.1	2.5	2.8	4.1	4.1	4.0	4.0	3.7
대구	4.8	5.2	5.3	4.7	5.2	4.3	4.7	4.4	4.1	3.4
인천	3.5	3.2	3.1	3.8	3.6	5.1	5.2	5.3	5.1	4.5
광주	3.3	2.8	2.4	2.1	2.2	4.4	4.2	4.3	4.0	3.8
대전	2.4	2.9	2.5	2.1	3.4	4.7	4.7	4.0	3.9	3.6
울산	4.6	3.9	3.0	3.2	4.8	4.8	5.0	5.0	4.2	3.6
세종	2.7	4.4	4.4	0.9	0.2	6.3	5.9	5.8	6.5	5.5
경기	10.0	9.8	9.5	11.2	11.4	5.3	4.9	5.3	5.0	4.7
강원	15.9	17.6	18.7	18.7	20.8	1.8	1.9	2.0	1.9	1.7
충북	6.7	5.1	5.8	6.3	6.1	2.2	2.2	2.2	1.9	1.9
충남	12.2	9.8	9.8	14.0	12.0	2.9	2.9	2.8	3.0	2.5
전북	7.8	8.2	7.3	8.1	7.4	1.9	1.8	1.9	1.7	1.5
전남	13.5	15.2	19.2	17.6	16.2	1.8	1.7	1.8	1.6	1.6
경북	9.7	9.9	9.5	10.2	11.9	1.7	1.8	1.7	1.7	1.5
경남	7.6	8.1	6.5	8.4	8.8	2.8	3.0	2.9	2.8	2.5
제주	10.6	13.1	12.0	10.5	8.5	3.7	3.9	4.2	4.1	3.5
전체	7.1	7.0	7.1	7.8	7.8	4.1	4.1	4.1	3.9	3.6

출처: 김혜자(2021)의 그림3을 표로 제시



[그림1]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2016-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을 확인해보면, 전반적으로 시지역에 비해 도지역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시지역에서는 서울(0.32%), 도지역에서는 경기

2) 김혜자(2021). 일반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2016-2020). 교육정책포럼 340호. 한국교육개발원.

(0.54%)가 가장 높았다. 한편 2019년 대비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던 지역들이 확인되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단위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사업 운영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4> 동종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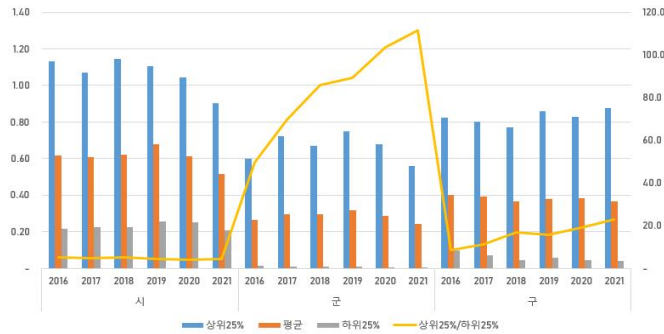
		상위25%		평균		하위25%		상위25%/하위2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	2016	1.13	0.24	0.62	0.37	0.21	0.10	5.3
	2017	1.07	0.25	0.61	0.34	0.23	0.09	4.8
	2018	1.14	0.37	0.62	0.39	0.22	0.10	5.1
	2019	1.10	0.15	0.68	0.33	0.26	0.10	4.3
	2020	1.04	0.16	0.61	0.31	0.25	0.10	4.1
	2021	0.91	0.15	0.52	0.28	0.21	0.09	4.4
군	2016	0.60	0.12	0.27	0.25	0.01	0.01	49.7
	2017	0.72	0.24	0.29	0.31	0.01	0.01	69.8
	2018	0.67	0.21	0.29	0.28	0.01	0.01	85.9
	2019	0.75	0.26	0.32	0.32	0.01	0.01	89.3
	2020	0.68	0.22	0.29	0.28	0.01	0.01	103.5
	2021	0.56	0.20	0.24	0.24	0.01	0.00	111.6
구	2016	0.83	0.23	0.40	0.31	0.10	0.04	8.6
	2017	0.80	0.21	0.39	0.30	0.07	0.05	11.1
	2018	0.77	0.19	0.36	0.30	0.05	0.04	16.8
	2019	0.86	0.31	0.38	0.35	0.06	0.04	15.5
	2020	0.83	0.19	0.38	0.32	0.04	0.03	19.2
	2021	0.88	0.27	0.37	0.36	0.04	0.03	22.8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인출일: 2022.9.7.)를 활용하여 산출

다음은 동종단체별로 2016-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군지역과 구지역에 비해 시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양호한 편으로 확인된다. 동종단체(시)의 상위25%와 하위25%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2016년 동종단체(시) 상위25%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하위 25%에 비해 5.3배 높았는데, 2021년에는 4.4배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차이가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동종단체(시) 상위 25%의 평균값 하락의 영향일 수 있어 상위/하위그룹의 실질적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한편 동종단체(군)의 경우 2016년 상위25%가 하위25%에 비해 49.7배 높았고, 2021년에는 111.6배로 상위/하위그룹의 격차가 매우 커졌다. 동종단체(군) 상위25% 집단의 평균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동종단체(시)와 차이가 있다. 동종단체(군) 상위25% 집단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2016년 0.12에서 2021년 0.20으로 증가했고, 상위25% 집단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평균은 0.60%에서 0.56%로 감소했다. 즉 상위25% 집단에 포함된 지역 간 차이가 보다 커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동종단체(시)의 경우 평균이 감소할 때 표준편차도 함께 낮아졌던 것에 비해 동종단체(군)의 평균은 감소하고 표준편차는 증가해 집단 내 이질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종단체(구)의 경우 2016년 상위25%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하위25%의 8.6배였고, 2021년에는 22.8배로 크게 증가했다. 상위25% 집단의 평균값은 2016년 대비 0.05%p 증가하였고,

하위25% 집단의 평균값은 2016년 대비 2021년 0.06%p 감소하였다. 이처럼 평균적으로 동종단체(군) 상위25%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보다 커진 반면 하위25% 집단에 포함된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보다 낮아졌다. 즉 상위25% 대비 하위25%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2] 동종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 동종단체(시)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2016년과 2021년 모두 동종단체(시) 상위25%에 포함된 지역은 경기도 소재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하위25%에 포함된 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 소재 지역들이 다수이며, 전북남원시는 2016년과 2021년 모두 최저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과천시 2016년 동종단체(시) 상위25% 중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7년 12월 27일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이 추가되었고, 또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두어 학교개방 및 방과후교실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경기과천시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0.60%로 2016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져 상위25%에 포함되지 못했다. 경기도오산시는 2016년과 2021년 모두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높아 동종단체(시) 상위25%에 포함되었다.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살펴보면,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 혁신 교육사업, 유아방과후과정 운영 등을 보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16년과 2021년 하위25%에 포함된 전북남원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없고, 전북김제시는 2021년 2월 25일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전북김제시 조례의 보조사업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표5> 동종단체(시) 상/하위25% 교육경비보조금

(단위: %)

상위25%				하위25%			
2016		2021		2016		2021	
경기과천시	1.62	전남광양시	1.21	전북남원시	-	전북남원시	0.06
경기의왕시	1.59	경기광주시	1.12	전북김제시	0.07	전북김제시	0.07
경기성남시	1.42	경기안성시	1.09	경북상주시	0.07	전북전주시	0.08
경기오산시	1.36	경기오산시	1.09	경기김포시	0.12	경북상주시	0.10
경기안양시	1.25	경기군포시	1.04	전북익산시	0.12	충북청주시	0.10
충남당진시	1.24	경기성남시	1.01	전북전주시	0.15	전북익산시	0.16
경기안산시	1.20	경기의왕시	0.97	전남나주시	0.18	경북안동시	0.18
경기수원시	1.19	경기파주시	0.93	경기용인시	0.20	경북포항시	0.20
경기하남시	1.18	경기하남시	0.87	강원원주시	0.23	경북구미시	0.21
경기부천시	1.15	경기김포시	0.86	경북포항시	0.24	충북제천시	0.21
전남여수시	1.09	경기안양시	0.85	충북충주시	0.25	경남진주시	0.23
경기군포시	1.00	경기부천시	0.83	전남목포시	0.28	경북경주시	0.25
경기여주시	0.99	경기평택시	0.82	충남계룡시	0.28	경북영천시	0.26
경기평택시	0.96	경기시흥시	0.81	경북문경시	0.29	전북군산시	0.29
경기의정부시	0.88	경기화성시	0.81	충북청주시	0.30	충남계룡시	0.29
경기화성시	0.88	전남여수시	0.78	경남밀양시	0.30	경북영주시	0.30
경기안성시	0.85	경기용인시	0.76	강원춘천시	0.32	경남밀양시	0.30
경기파주시	0.84	충남당진시	0.69	경북김천시	0.33	전북정읍시	0.32
경기구리시	0.82	경기여주시	0.67	경북경주시	0.34	경기구리시	0.33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인출일: 2022.9.7.)를 활용하여 산출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28.]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747호, 2021. 4. 28., 일부개정]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 1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8.5.30)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교육 정보화 사업
5.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 (신설 2015.11.13.)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5.11.13.)

제6조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개정 2015.11.13.)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2.9.16.)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 16.]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655호, 2018. 4. 16., 일부 개정]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치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8. 혁신교육사업 9.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 지원경비 10. 삭제 <2018. 4. 1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예외로 한다.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1. 2. 25.]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365호, 2021. 2. 25., 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2.9.16.)

○ 동종단체(군)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시와 구에 비해 동종단체(군)는 집단 내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그림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종단체별 상위25% 대비 하위25%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2021년 동종단체(시) 4.4배, 동종단체(군) 111.6배, 동종단체(구) 22.8배로 동종단체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동종단체(군)의 집단 내 차이는 2016년 49.7배에서 2021년 111.6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종단체(군)에 포함된 지역들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시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면서 동시에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며, 특히 이러한 지역 간 차이가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종단체(군) 상위25%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최고지역은 부산기장군이며, 2016년 대비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또한 2016년 최고지역인 강원평창군(0.81%)과 비교할 때 2021년 부산기장군(1.11%)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0.30%p 높다. 한편 2016년 충남예산군(0.45%)과 2021년 경북칠곡군(0.38%)을 비교해보면, 2016년 대비 2021년 상위25% 기준선이 0.07%p 낮아졌다. 이처럼 상위25% 집단 내 최고지역과 최저지역 간의 차이가 2016년 0.36%p에서 2021년 0.73%p로 약 2배 가까이 커졌다. 한편 경남하동군은 2016년과 2021년 모두 최저지역이었고, 하위 25%의 경우에는 0.00%에 해당하는 지역이 2016년 4개에서 2021년 12개 지역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평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교육협력 지원사업과 교육복지 증진 사업을 보조사업 범위에 포함하였고, 하동군의 경우에는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6> 동종단체(군) 상위25% 교육경비보조금

(단위: %)

상위25%				하위25%			
2016		2021		2016		2021	
강원평창군	0.81	부산기장군	1.11	경남하동군	-	경남합천군	0.00
경기가평군	0.79	경기양평군	0.99	충북영동군	-	경남하동군	0.00
경기연천군	0.78	경기가평군	0.72	경남산청군	0.00	경남의령군	0.00
강원영월군	0.75	전남화순군	0.70	경남남해군	0.00	인천옹진군	0.00
강원정선군	0.74	강원영월군	0.68	경남창녕군	0.01	충북단양군	0.00
인천강화군	0.70	강원홍천군	0.64	경남고성군	0.01	충북괴산군	0.00
전남화순군	0.65	강원평창군	0.60	경남합천군	0.01	충북영동군	0.00
대구달성군	0.57	인천강화군	0.56	경북예천군	0.01	충북옥천군	0.00
부산기장군	0.57	경기연천군	0.56	인천옹진군	0.01	경남함양군	0.00
강원횡성군	0.56	전남무안군	0.54	경북성주군	0.01	충북보은군	0.00
울산울주군	0.56	경북영덕군	0.50	경북군위군	0.01	경남고성군	0.00
강원양구군	0.56	강원횡성군	0.48	충북괴산군	0.01	경북고령군	0.00
강원철원군	0.55	대구달성군	0.47	경남거창군	0.01	경북의성군	0.01
전북무주군	0.54	전남강진군	0.44	경북청도군	0.01	충북증평군	0.01
경북칠곡군	0.52	강원고성군	0.43	경북봉화군	0.01	경북청도군	0.01
충북진천군	0.50	충남금산군	0.42	경북영양군	0.02	경남산청군	0.01
전남영암군	0.50	강원철원군	0.41	전남장흥군	0.02	경북청송군	0.01
전남강진군	0.50	전남영암군	0.40	경남의령군	0.02	경북성주군	0.01
강원고성군	0.49	전북무주군	0.38	경북영덕군	0.02	경북군위군	0.01
충남금산군	0.49	울산울주군	0.38	경북청송군	0.03	경북영양군	0.01
충남예산군	0.45	경북칠곡군	0.38	경남함양군	0.03	경북봉화군	0.02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인출일: 2022.9.7.)를 활용하여 산출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975호, 2022. 2. 9., 일부개정]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2.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각급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 4.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u>교육협력 지원 사업</u> 8. <u>교육복지 증진 사업</u>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052호, 2014. 12. 29.,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u>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u> <신설 2010.5.1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2.9.16.)

○ 동종단체(구)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최근 5년간 동종단체(구)의 상위25%와 하위25%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편이었지만, 상위25% 대비 하위25%의 차이는 시와 군과 마찬가지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는 2016년과 2021년 모두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2021년 최고지역은 서울 영등포구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동구는 2016년과 2021년 모두 최저지역에 해당했다. 2016년과 2021년 상위25%에 포함된 지역들을 비교해보면, 상위25% 내 하위3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2016년 대비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하위25%에 포함된 지역들 모두 2016년 대비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후를 비교해보면 상위25%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높아지고, 하위25%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낮아져 동종단체(구)의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강남구는 학교 보안관제 운영,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친환경 급식사업 등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교사연수, 방과 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지원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다. 2021년 상위25% 최고지역 서울영등포구는 학력신장 특화사업, 학교특색사업,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양성 사업,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영등포구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생회 등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에게는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표7> 동종단체(구) 상위25% 교육경비보조금

(단위: %)

상위25%				하위25%			
2016		2021		2016		2021	
서울강남구	1.39	서울영등포구	1.55	광주동구	0.02	인천동구	0.00
서울성동구	1.18	서울강남구	1.26	대전동구	0.03	광주동구	0.00
서울영등포구	1.11	부산강서구	1.18	부산서구	0.04	대전대덕구	0.01
대구서구	1.09	서울동대문구	1.09	부산부산진구	0.04	대전중구	0.01
서울서초구	0.88	서울중구	1.05	대전서구	0.08	대전동구	0.01
서울동대문구	0.88	인천연수구	1.03	광주남구	0.09	광주남구	0.02
서울광진구	0.83	서울성동구	1.01	부산동래구	0.10	광주광산구	0.02
서울중구	0.80	서울중랑구	0.91	대구중구	0.10	대전서구	0.02
서울종로구	0.75	서울서초구	0.79	광주광산구	0.10	광주북구	0.02
서울강동구	0.73	서울양천구	0.75	광주북구	0.11	광주서구	0.04
인천서구	0.71	서울서대문구	0.72	부산동구	0.11	대전유성구	0.04
인천연수구	0.66	서울송파구	0.70	부산금정구	0.12	부산영도구	0.05
서울양천구	0.66	서울마포구	0.70	부산영도구	0.12	부산서구	0.05
서울중랑구	0.65	서울관악구	0.67	대전중구	0.12	부산부산진구	0.07
인천미추홀구	0.65	서울광진구	0.63	대전대덕구	0.13	부산남구	0.07
서울마포구	0.65	서울구로구	0.60	부산중구	0.13	부산금정구	0.09
서울구로구	0.63	서울동작구	0.58	대구남구	0.13	부산중구	0.09
서울송파구	0.60	인천중구	0.58	대전유성구	0.14	부산수영구	0.09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인출일: 2022.9.7.)를 활용하여 산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357호, 2016. 7. 8., 일부개정]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18, 2015.07.10> 1. 학교 급식시설·설비 사업 <개정 2005.7.8, 2010.12.24>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 2010.12.24>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0.12.24> 4. <u>학교 보안관제의 운영과 학교안전에 필요한 사업</u> <신설 2010.12.24> 5. <u>학교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u>과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0.12.24> 가. <u>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u> 나. <u>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 지원</u> 다. <u>학교 교사 교육 연수 지원</u> 라. <u>방과 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사업</u> 마. <u>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u>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16.07.08> 바. <u>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학생 교류 사업</u>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9. <u>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 구입 사업 및 친환경 급식 사업</u>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175호, 2017. 9. 21.,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9.27, 2009.07.30, 2013.07.25>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3.07.2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3.07.25>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07.09.27> [종전 제6호에서 이동<2017.09.21.>]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7.9.21.> 가. <u>학력신장 특화사업지원</u> 나. <u>학교 특색사업지원</u> 다. <u>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지원</u> 라. <u>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u>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일부개정 2013.07.25> <개정 2007.09.27> [종전 제8호에서 이동<2017.09.21.>]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제2조의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9.27> <개정 2013.07.25> 1.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개정 2017.09.21.> 3.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4. <u>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u> <신설 2017.09.21.>
---	---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2.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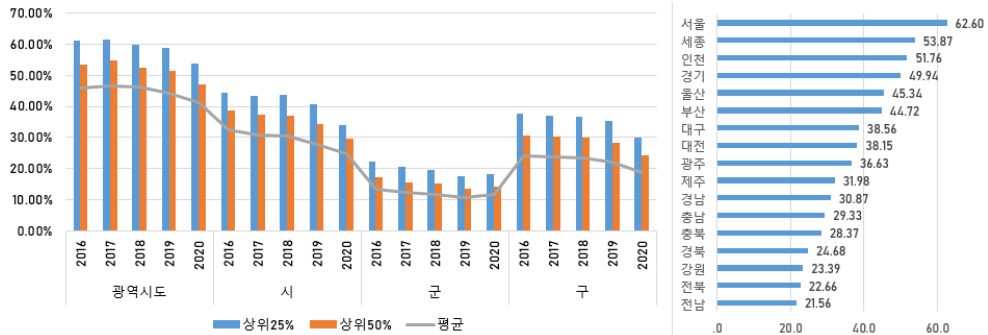
□ 재정자립도와 교육경비보조금

각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사회 재정자립도, 인구특성,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립 정도가 높을수록 관할구역 내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비율이 높아질 잠재적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세입결산액(최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로 산출되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제외된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준 2016년 45.12%에서 2020년 39.91%로 감소 추세다. 시도별

3) https://lofinmis.go.kr/websquare/websquarejsp?w2Path=/ui/portal/gongsi/item/sc002_tg002.xml&ix_code=A060&reOrg=after (인출일 2022.9.7.)

로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서울(62.6%), 세종(53.87%), 인천(51.76%), 경기(49.94%)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시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도지역에 비교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한편 경기를 제외한 도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0~30%대를 보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전남(21.56%), 전북(22.66%), 강원(23.39%), 경북(24.68%) 등으로 대부분 도지역이었다. 평균적으로 시, 구, 군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양상이다.



[그림3]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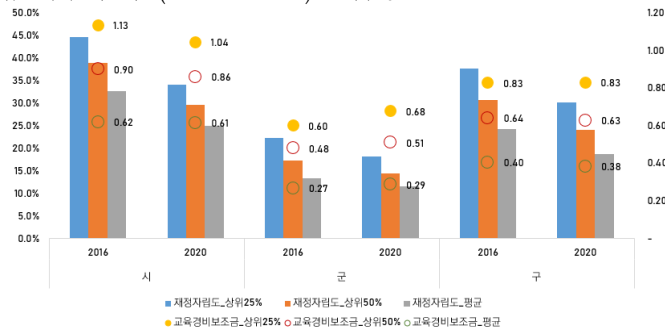
동종단체별로 재정자립도와 교육경비보조금을 확인해본 결과,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시, 구, 군 순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비율도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표> 재정자립도와 교육경비보조금(2016,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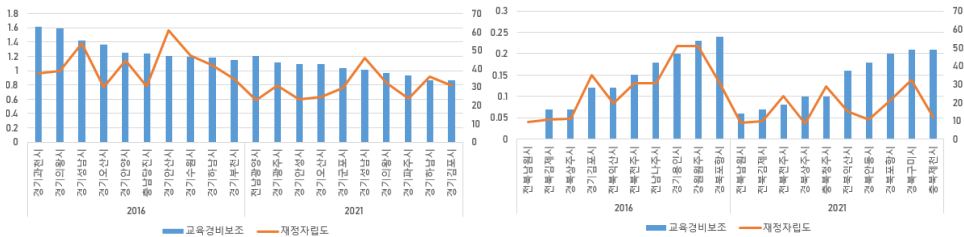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교육경비보조금		
		상위25%	상위50%	평균	상위25%	상위50%	평균
시	2016	44.5	38.8	32.5	1.13	0.90	0.62
	2020	34.0	29.6	24.8	1.04	0.86	0.61
군	2016	22.3	17.2	13.3	0.60	0.48	0.27
	2020	18.1	14.3	11.5	0.68	0.51	0.29
구	2016	37.7	30.6	24.2	0.83	0.64	0.40
	2020	30.1	24.1	18.7	0.83	0.63	0.38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인출일: 2022.9.7.)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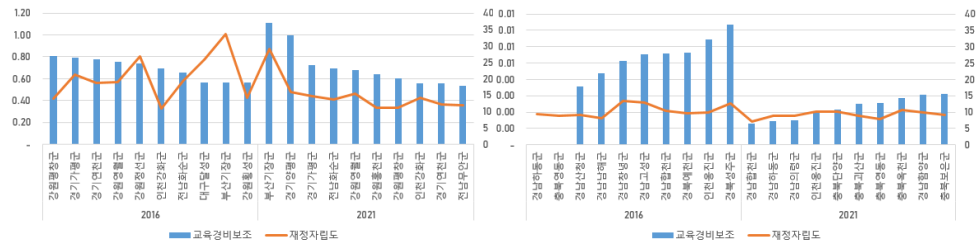
[그림4] 재정자립도 및 교육경비보조금(2016, 2020)

교육경비보조금을 동종단체별(시, 군, 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종단체별로 재정자립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6년과 2021년 동종단체별로 교육경비보조금 순으로 상위/하위 10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교육경비보조금을 표시하였다. 동종단체(시)의 경우 상위/하위 10개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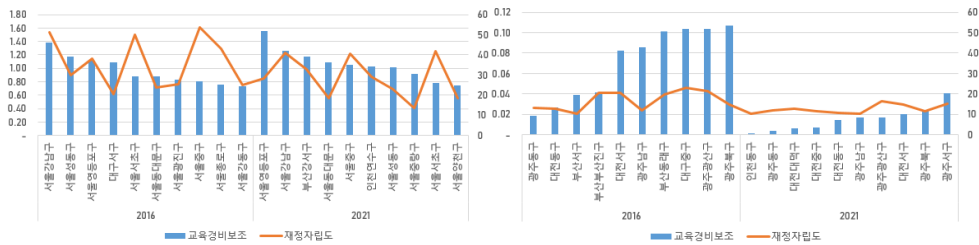
[그림5] 동종단체(시) 상위/하위 10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교육경비보조금(2016, 2021)

동종단체(군)의 2016년 상위 10개 지역 중 대구달성군과 부산기장군은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낮아진 재정자립도에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종단체(군) 하위 10개 지역들은 2016년과 2021년 모두 재정자립도가 10%대 수준이고,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0.00~0.01%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6] 동종단체(군) 상위/하위 10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교육경비보조금(2016,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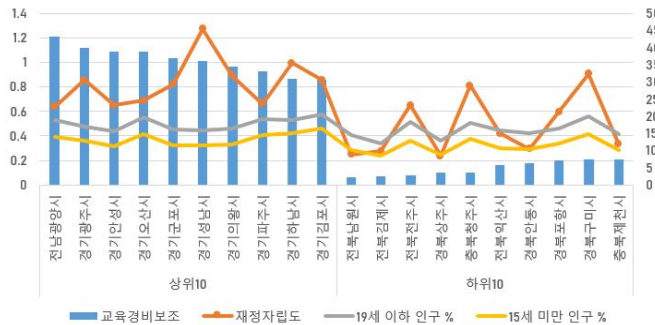
동종단체(구)의 2016년 상위 10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서초구와 서울중구 및 서울종로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해 2021년 상위 10개 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영등포구는 2016년 대비 2020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음에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1.11%에서 1.55%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7] 동종단체(구) 상위/하위 10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교육경비보조금(2016,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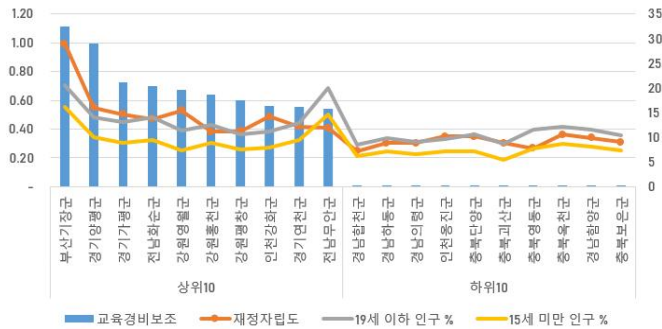
□ 학생인구와 교육경비보조금

2021년 기준 19세 이하 및 15세 미만 인구수(통계청 인구총조사)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특성과 교육경비보조금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동종단체별(시, 군, 구) 재정자립도 수준이 양호할 때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학생인구 비중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차별적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동종단체별로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높은 10개 자치단체와 낮은 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및 15세 미만 인구 비중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단체(시) 상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 평균은 17.8%였고, 하위10개 자치단체의 평균은 15.8%였다. 또한 상위10개 자치단체의 15세 미만 인구 비중 평균은 13.4%였고, 하위10개 자치단체의 평균은 11.2%였다. 이처럼 상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이 하위10개 자치단체에 비해 약 2.00%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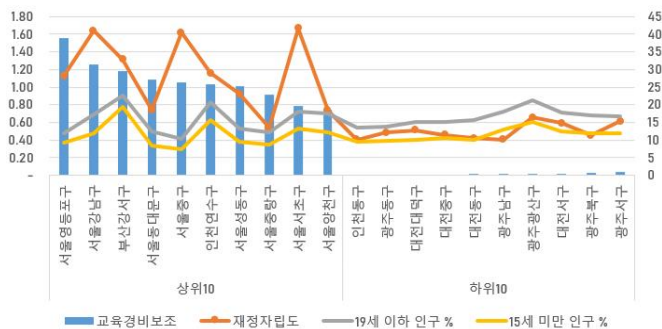
[그림8] 동종단체(시) 상위/하위 10개 자치단체 학생인구 및 교육경비보조금(2021)

동종단체(군)의 경우 상위/하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 평균은 각각 14.0%, 10.2%였고, 그 집단 간 차이는 3.81%p였다. 상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이 하위10개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며, 동종단체(시)에 비해 상위/하위 집단 간 차이가 큰 편이었다.



[그림9] 동종단체(군) 상위 10개 자치단체 학생인구 및 교육경비보조금(2021)

한편 동종단체(구)의 상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 평균은 15.6%, 하위 10개 자치단체의 평균은 16.4%로 하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종단체(구)의 경우 상위/하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수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지역 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차이가 큰 특징을 보였다.



[그림10] 동종단체(구) 상위 10개 자치단체 학생인구 및 교육경비보조금(2021)

제47회 청소년정책 포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2022.9.21.(수)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자

CONTENTS

- 0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 02 재정자립도와 교육경비보조금
- 03 학생인구와 교육경비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01

교육경비보조 목적 및 지원범위, 법적근거

01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02

지원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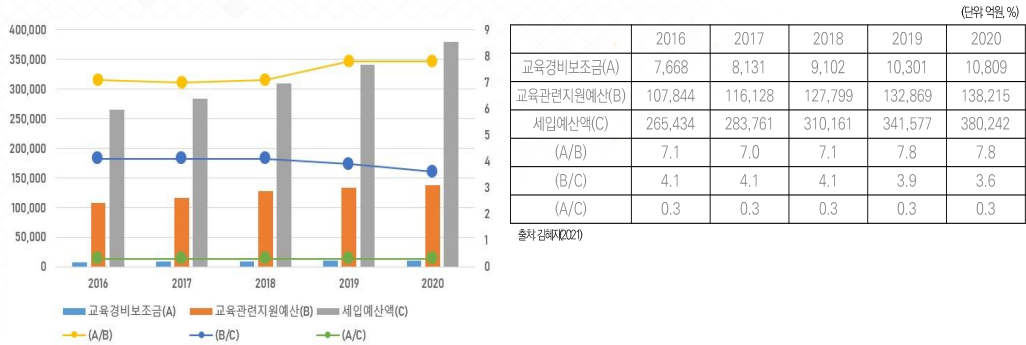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03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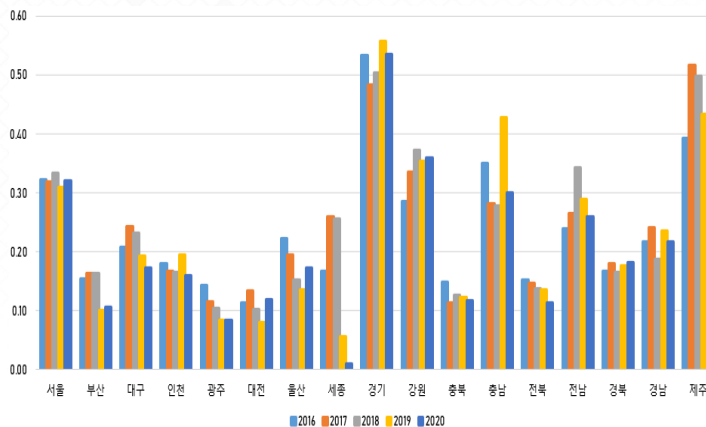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반자치단체의 교육관련지원 예산 현황(2016-2020)



-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지원 예산) 법정부담금, 비법정부담금, 학교용지매입비, 학교급식보조, 교육경비보조금 등
- 최근 5년간 교육관련지원 예산규모 증가추세
- 교육관련지원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2016년 7.1% → 2020년 7.8%

교육경비보조금 비율(2016-2020)



- 시지역에 비해 도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높은 편
- 2020년 기준 서울(0.32%), 경기(0.54%)
- 코로나19 영향 → 2019년 대비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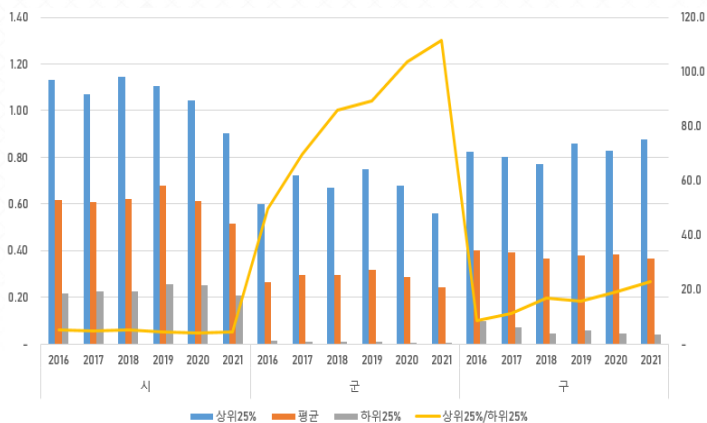
동종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2016-2021)

(단위: % 배)

		상위25%		평균		하위25%		상위25%/하위2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	2016	1.13	0.24	0.62	0.37	0.21	0.10	5.3
	2017	1.07	0.25	0.61	0.34	0.23	0.09	4.8
	2018	1.14	0.37	0.62	0.39	0.22	0.10	5.1
	2019	1.10	0.15	0.68	0.33	0.26	0.10	4.3
	2020	1.04	0.16	0.61	0.31	0.25	0.10	4.1
	2021	0.91	0.15	0.52	0.28	0.21	0.09	4.4
군	2016	0.60	0.12	0.27	0.25	0.01	0.01	49.7
	2017	0.72	0.24	0.29	0.31	0.01	0.01	69.8
	2018	0.67	0.21	0.29	0.28	0.01	0.01	85.9
	2019	0.75	0.26	0.32	0.32	0.01	0.01	89.3
	2020	0.68	0.22	0.29	0.28	0.01	0.01	103.5
	2021	0.56	0.20	0.24	0.24	0.01	0.00	111.6
구	2016	0.83	0.23	0.40	0.31	0.10	0.04	8.6
	2017	0.80	0.21	0.39	0.30	0.07	0.05	11.1
	2018	0.77	0.19	0.36	0.30	0.05	0.04	16.8
	2019	0.86	0.31	0.38	0.35	0.06	0.04	15.5
	2020	0.83	0.19	0.38	0.32	0.04	0.03	19.2
	2021	0.88	0.27	0.37	0.36	0.04	0.03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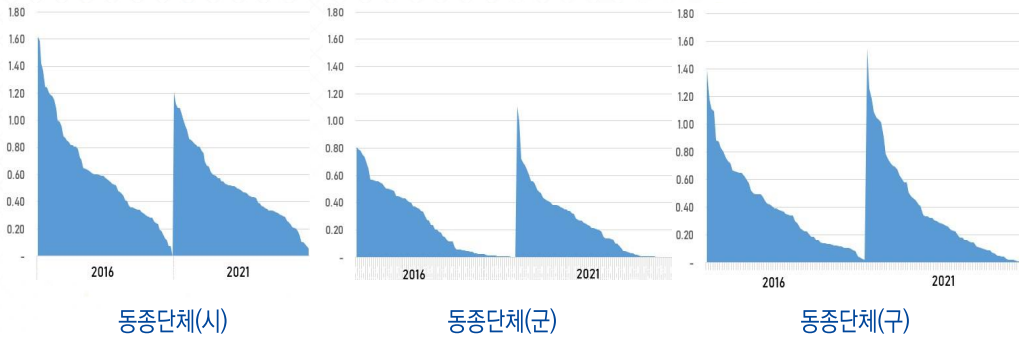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자료(출발 2022.9.7.를 활용하여 산출)

동종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2016-2021)



- 시 지역이 군, 구 지역에 비해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양호한 편
- 동종단체(시) 상위25%/하위25% 2016년 5.3배 → 2021년 4.4배
- 동종단체(군) 상위25%/하위25% 2016년 49.7배 → 2021년 111.6배
- 동종단체(구) 상위25%/하위25% 2016년 8.6배 → 2021년 22.8배

동종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 동종단체(군, 구) 2016년 대비 2021년 상위25%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증가

동종단체(시)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단위: %)

상위25%				하위25%			
2016		2021		2016		2021	
경기과천시	1.62	전남광양시	1.21	전북남원시	-	전북남원시	0.06
경기의왕시	1.59	경기광주시	1.12	전북김제시	0.07	전북김제시	0.07
경기성남시	1.42	경기안성시	1.09	경북상주시	0.07	전북전주시	0.08
경기오산시	1.36	경기오산시	1.09	경기김포시	0.12	경북상주시	0.10
경기안양시	1.25	경기군포시	1.04	전북익산시	0.12	충북청주시	0.10
충남당진시	1.24	경기성남시	1.01	전북진주시	0.15	전북익산시	0.16
경기안산시	1.20	경기의왕시	0.97	전남나주시	0.18	경북안동시	0.18
경기수원시	1.19	경기파주시	0.93	경기용인시	0.20	경북포항시	0.20
경기하남시	1.18	경기하남시	0.87	강원원주시	0.23	경북구미시	0.21
경기북천시	1.15	경기김포시	0.86	경북포항시	0.24	충북제천시	0.21
전남여수시	1.09	경기안양시	0.85	충북충주시	0.25	경남진주시	0.23
경기군포시	1.00	경기부천시	0.83	전남목포시	0.28	경북경주시	0.25
경기여주시	0.99	경기평택시	0.82	충남계룡시	0.28	경북영천시	0.26
경기평택시	0.96	경기시흥시	0.81	경북문경시	0.29	전북군산시	0.29
경기의정부시	0.88	경기화성시	0.81	충북청주시	0.30	충남계룡시	0.29
경기화성시	0.88	전남여수시	0.78	경남밀양시	0.30	경북영주시	0.30
경기안성시	0.85	경기양주시	0.76	강원춘천시	0.32	경남밀양시	0.30
경기파주시	0.84	충남당진시	0.69	경북김천시	0.33	전북정읍시	0.32
경기구리시	0.82	경기여주시	0.67	경북경주시	0.34	경기구리시	0.33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인출일: 2022.9.7)를 활용하여 산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과천시, 오산시, 김제시

과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28.] [과천시조례제174호, 2021. 4. 28.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사업
19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소설 2008.5.30)
2. 지역사회의 문화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4. 학교교육정보화사업
5. 교육질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유치원과 관련 지원사업(신설 2015.11.13)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5.11.13)

제3조(보조금과 보조금의 사용)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방과후 학교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개정 2015.11.13)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2.9.16)

오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 16.] [오산시조례제166호, 2018. 4. 16.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특수목적용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교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8. 학사교육사업
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제4항에 따른 시립유치원 지원경비와 방과 후 과
- 정 운영 등 지원경비
10. 삭제(2018. 4. 1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제항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도비 등 재정지원사업과 교육과정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예외로 한다.

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제4항에 따른 시립유치원 지원경비와 방과 후 과

정 운영 등 지원경비

10. 삭제(2018. 4. 1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2.9.16)

김제시 교육지원조례

[시행 2021. 2. 25.] [김제시조례제366호, 2021. 2. 25. 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소도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동종단체(군)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단위: %)

상위25%				하위25%			
2016		2021		2016		2021	
강원평창군	0.81	부산기장군	1.11	경남하동군	-	경남합천군	0.00
경기가평군	0.79	경기양평군	0.99	충북영동군	-	경남하동군	0.00
경기연천군	0.78	경기가평군	0.72	경남산청군	0.00	경남의령군	0.00
강원영월군	0.75	전남화순군	0.70	경남하남군	0.00	인천옹진군	0.00
강원정선군	0.74	강원영월군	0.68	경남창녕군	0.01	충북단양군	0.00
인천강화군	0.70	강원홍천군	0.64	경남고성군	0.01	충북괴산군	0.00
전남화순군	0.65	강원평창군	0.60	경남합천군	0.01	충북영동군	0.00
대구달성군	0.57	인천강화군	0.56	경북예천군	0.01	충북옥천군	0.00
부산기장군	0.57	경기연천군	0.56	인천옹진군	0.01	경남함양군	0.00
강원황성군	0.56	전남무안군	0.54	경북성주군	0.01	충북보은군	0.00
울산울주군	0.56	경북영덕군	0.50	경북군위군	0.01	경남고성군	0.00
강원양구군	0.56	강원황성군	0.48	충북괴산군	0.01	경북고령군	0.00
강원철원군	0.55	대구달성군	0.47	경남거창군	0.01	경북의성군	0.01
전북무주군	0.54	전남강진군	0.44	경북청도군	0.01	충북증평군	0.01
경북칠곡군	0.52	강원고성군	0.43	경북북한군	0.01	경북청도군	0.01
충북진천군	0.50	충남금산군	0.42	경북영양군	0.02	경남산청군	0.01
전남영암군	0.50	강원철원군	0.41	전남정읍군	0.02	경북청송군	0.01
전남강진군	0.50	전남영암군	0.40	경남의령군	0.02	경북성주군	0.01
강원고성군	0.49	전북무주군	0.38	경북영덕군	0.02	경북군위군	0.01
충남금산군	0.49	울산울주군	0.38	경북청송군	0.03	경북영양군	0.01
충남예산군	0.45	경북칠곡군	0.38	경남함양군	0.03	경북봉화군	0.02

출처: 지방재정통합공시스템 자료인출일 2022.9.7를 활용하여 산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가평군, 하동군

가평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975호, 2022. 2. 9., 일부개정]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각급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4.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교육협력지원사업
8. 교육복지증진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2.9.16.)

하동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052호, 2014. 12. 29.,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산설 2010.5.1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동종단체(구)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단위: %)

상위25%				하위25%			
2016		2021		2016		2021	
서울강남구	1.39	서울영등포구	1.55	광주동구	0.02	인천동구	0.00
서울성동구	1.18	서울강남구	1.26	대전동구	0.03	광주동구	0.00
서울영등포구	1.11	부산강서구	1.18	부산서구	0.04	대전대덕구	0.01
대구서구	1.09	서울동대문구	1.09	부산부산진구	0.04	대전중구	0.01
서울서초구	0.88	서울중구	1.05	대전서구	0.08	대전동구	0.01
서울동대문구	0.88	인천연수구	1.03	광주남구	0.09	광주남구	0.02
서울광진구	0.83	서울성동구	1.01	부산동래구	0.10	광주광산구	0.02
서울중구	0.80	서울중랑구	0.91	대구중구	0.10	대전서구	0.02
서울종로구	0.75	서울서초구	0.79	광주광산구	0.10	광주북구	0.02
서울강동구	0.73	서울양천구	0.75	광주북구	0.11	광주서구	0.04
인천서구	0.71	서울서대문구	0.72	부산동구	0.11	대전유성구	0.04
인천연수구	0.66	서울송파구	0.70	부산금정구	0.12	부산영도구	0.05
서울양천구	0.66	서울마포구	0.70	부산영도구	0.12	부산서구	0.05
서울중랑구	0.65	서울관악구	0.67	대전중구	0.12	부산부산진구	0.07
인천미추홀구	0.65	서울광진구	0.63	대전대덕구	0.13	부산남구	0.07
서울마포구	0.65	서울구로구	0.60	부산중구	0.13	부산금정구	0.09
서울구로구	0.63	서울동작구	0.58	대구남구	0.13	부산중구	0.09
서울송파구	0.60	인천중구	0.58	대전유성구	0.14	부산수영구	0.09

출처: 지방재정통합개시시스템 자료(인출일: 2022.9.7.)를 활용하여 산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강남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35호, 2016. 7. 8.,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학교 급식시설 설치사업 <개정 2009.12.18, 2015.07.10>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개정 2006.7.8, 2010.12.24>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0.12.24>
4. 학교 보안관제의 운영과 학교 안전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0.12.24>
5. 학교의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0.12.24>
- 가.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
- 나. 영어체험센터 설치 운영 지원
- 다. 학교 교사 교육 연수 지원
- 라. 방과 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 운영 지원
- 마.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16.07.08>
- 바.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학생 교류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8.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9.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 구입 사업 및 친환경 급식 사업
10. 그 밖에 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출처: <https://www.law.go.kr/LSN/main.html> (인출일: 2022.9.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175호, 2017. 9. 21.,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9.27, 2009.07.30, 2013.07.25>

1.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3.07.2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3.07.25>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07.09.27>
- [중전 제6호에서 이동 <2017.09.21.>]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신설 2017.9.21.>
- 가. 한림사립대학사우회 지원
- 나. 학교 특색사업 지원
- 다. 우수인재 및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
- 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일부개정 2013.07.25> <개정 2007.09.27>
- [중전 제6호에서 이동 <2017.0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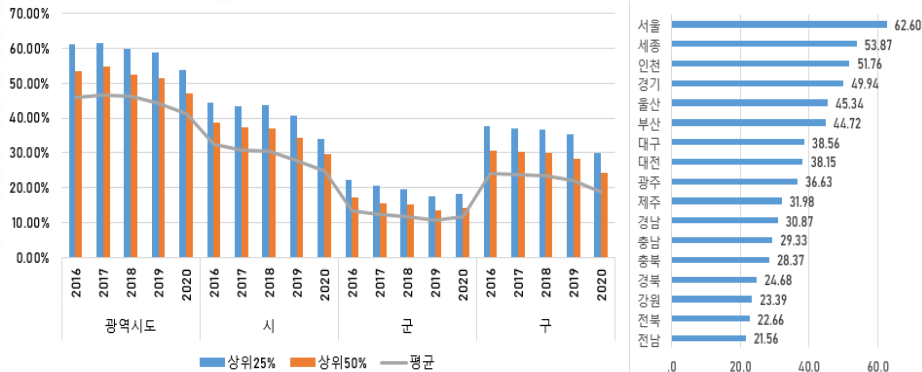
제3조(제2조 보조사업의 결정순서) 제2조의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9.27> <개정 2013.07.25>

1.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개정 2017.09.21.>
3.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4.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생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사를 제출한 학교 <신설 2017.09.21.>

재정자립도와 교육경비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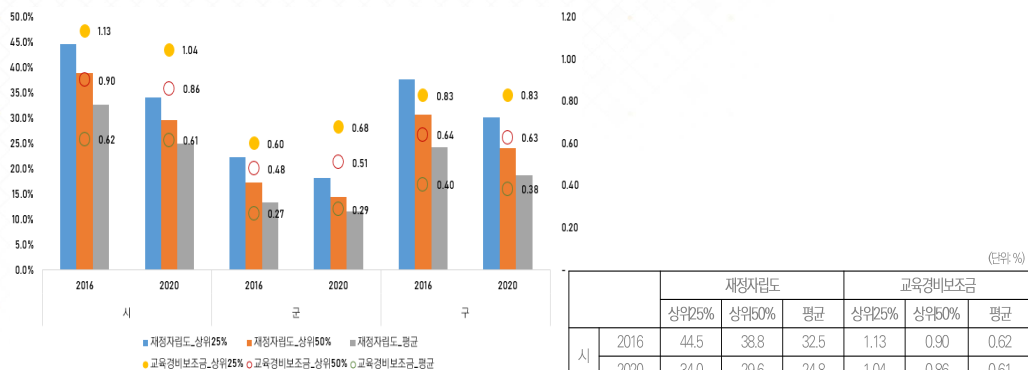
02

재정자립도(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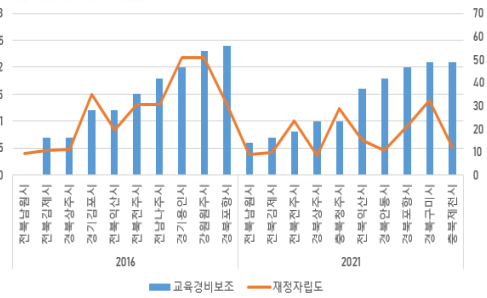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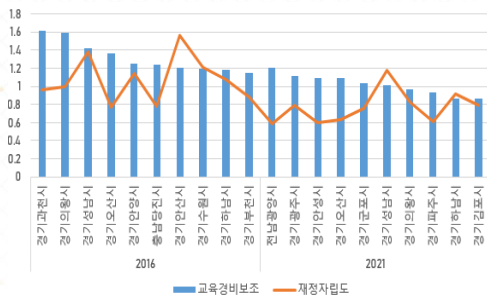
-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결산액(최종)
- 2016년 45.12% → 2020년 39.91% 감소추세
- 2020년 기준, 시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
- 동종단체 시)군)구 순으로 재정자립도 양호한 편

재정자립도와 교육경비보조금(2016,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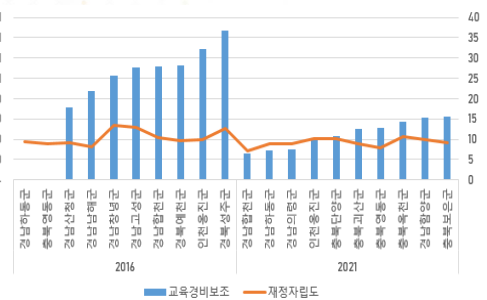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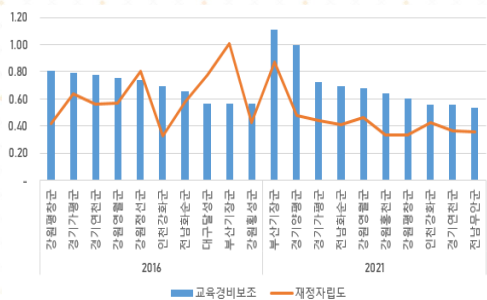
출처: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자료(출발 2022.9.7)를 재구성

동종단체(시) 재정자립도 및 교육경비보조금 비율(2016,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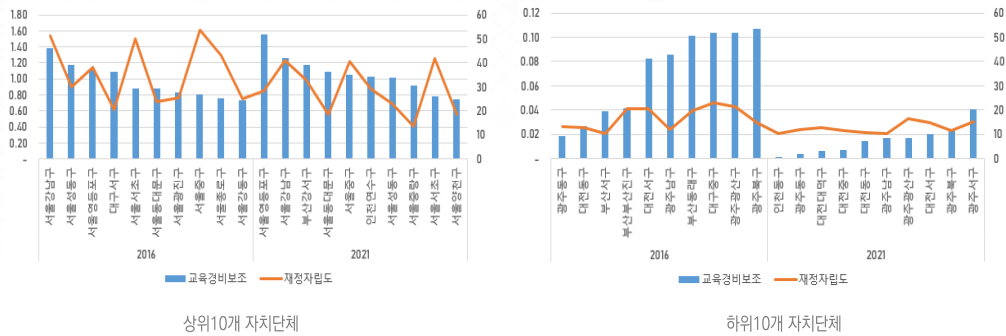
- 2016년 대비 2021년 재정자립도 전반적 하향,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유사 수준
- 상위10개 지역 재정자립도와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유사한 패턴

동종단체(군) 재정자립도 및 교육경비보조금 비율(2016, 2021)



- 2016년 대구달성군과 부산기장군은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낮은 편
- 2021년 재정자립도 전반적 하향추세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일정하게 유지

동종단체(구) 재정자립도 및 교육경비보조금 비율(2016,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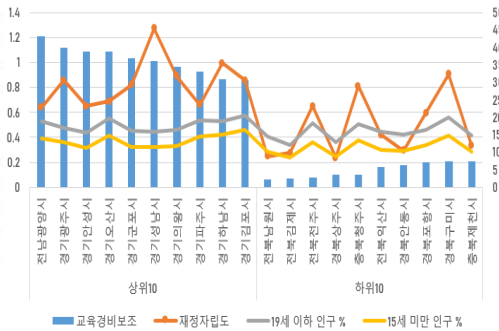


- 2016년 서울서초구, 서울중구 및 서울종로구는 높은 재정자립도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낮은 편
- 2021년 상위10개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

학생인구와 교육경비보조금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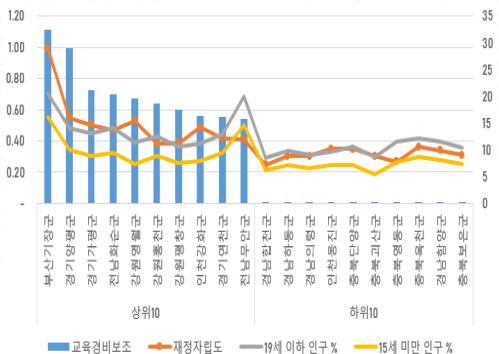
동종단체(시) 학생인구 및 교육경비보조금 비율(2021)



		교육경비보조	재정자립도	19세이하인구%	15세미만인구%
상위10	전남영광시	1.21	22.81	18.8	14.0
	경기광주시	1.12	30.6	17.1	13.0
	경기안성시	1.09	23.19	15.7	11.2
	경기오산시	1.09	24.61	19.6	14.9
	경기군포시	1.04	29.36	16.1	11.5
	경기성남시	1.01	46.56	15.9	11.5
	경기의정부시	0.97	31.94	16.4	11.9
	경기파주시	0.93	23.7	19.2	14.4
	경기하남시	0.87	36.6	18.9	15.2
	경기김포시	0.86	30.64	20.6	16.5
하위10	전북남원시	0.06	8.87	14.4	10.3
	전북김제시	0.07	9.77	12.0	8.5
	전북전주시	0.08	23.28	18.3	12.8
	경북상주시	0.1	8.53	12.8	8.7
	충북청주시	0.1	28.96	18.2	13.3
	전북익산시	0.16	15.01	16.0	10.7
	경북안동시	0.18	10.52	15.1	10.4
	경북포항시	0.2	21.39	16.4	12.1
	경북구미시	0.21	32.37	20.1	14.9
	충북제천시	0.21	11.84	14.9	10.1

- 상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 평균 17.8%, 15세 미만 인구 비중 평균 13.4%
- 하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 평균 15.8%, 15세 미만 인구 비중 평균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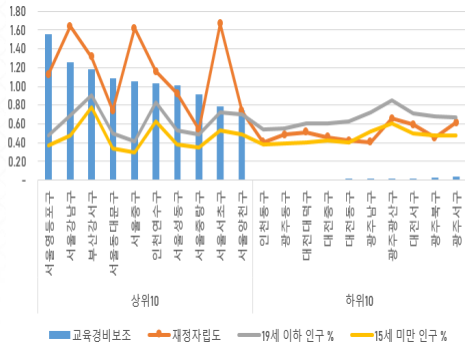
동종단체(군) 학생인구 및 교육경비보조금 비율(2021)



		교육경비보조	재정자립도	19세이하인구%	15세미만인구%
상위10	부산기장군	1.11	28.98	20.6	16.2
	경기양평군	0.99	15.98	14.1	10.0
	경기양주군	0.72	14.7	13.0	8.9
	전남해운대군	0.70	13.75	14.0	9.4
	강원영월군	0.68	15.44	11.4	7.4
	강원홍천군	0.64	11.1	12.5	8.9
	강원평창군	0.60	11.26	10.6	7.6
	인천남동군	0.56	14.21	11.2	7.8
	경기안성군	0.56	12.17	12.9	9.5
	전남무안군	0.54	11.91	20.1	14.7
하위10	경남합천군	0.00	7.21	8.6	6.1
	경남하동군	0.00	8.85	9.9	7.1
	경남하남군	0.00	8.79	9.1	6.5
	인천옹진군	0.00	10.19	9.6	7.1
	충북제천시	0.00	10.2	10.5	7.1
	충북괴산군	0.00	8.8	8.7	5.5
	충북영동군	0.00	7.74	11.6	7.8
	충북옥천군	0.00	10.54	12.2	8.7
	경남함양군	0.00	9.87	11.6	8.1
	충북보은군	0.00	9.04	10.5	7.4

- 상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 평균 14.0%, 15세 미만 인구 비중 평균 10.0%
- 하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 평균 10.2%, 15세 미만 인구 비중 평균 7.1%

동종단체(구) 학생인구 및 교육경비보조금 비율(2021)



		교육경비보조	재정자립도	19세이하인구%	15세미만인구%
상위10	서울영등포구	1.55	28.22	12.0	9.2
	서울강남구	1.26	41.02	17.2	12.0
	부산강서구	1.18	32.82	22.5	19.5
	서울동대문구	1.09	18.51	12.4	8.6
	서울중구	1.05	40.44	10.3	7.4
	인천연수구	1.03	28.97	20.7	15.5
	서울성동구	1.01	23.06	13.1	9.6
	서울중앙구	0.91	13.43	12.1	8.7
	서울서초구	0.79	41.65	18.2	13.3
	서울양천구	0.75	18.43	17.6	12.2
하위10	인천동구	0.00	10.17	13.5	9.6
	광주동구	0.00	12.08	13.9	9.8
	대전과정구	0.01	12.75	15.1	10.1
	대전중구	0.01	11.5	15.1	10.5
	대전동구	0.01	10.6	15.6	10.1
	광주남구	0.02	10.11	18.1	13.0
	광주경산구	0.02	16.37	21.3	15.2
	대전서구	0.02	14.75	17.8	12.4
	광주북구	0.02	11.34	16.9	11.9
	광주서구	0.04	15.27	16.8	11.8

- 상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 평균 15.6%, 15세 미만 인구 비중 평균 11.6%
- 하위10개 자치단체의 19세 이하 인구 비중 평균 16.4%, 15세 미만 인구 비중 평균 11.4%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김동균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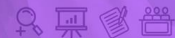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김동균 부연구위원

2022.09.21.

CONTENTS



- 1 청소년 관련 법령체계
- 2 현행법상 청소년 지원제도
- 3 청소년 지원제도의 한계
- 4 지방교육재정을 통한 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청소년 관련 법령체계

1 청소년 관련 법령체계



헌법

- ⊗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청소년 ”
- ⊗ 헌법 제34조제3항은 국가에 대해 청소년의 특별한 보호의무 부여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 “청소년은 자율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정하여 나갈 결정권을 가지나,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지력이 미약하며, 의사결정에 있어 부모나 친권자 등의 지도가 필요하다”(헌법재판소 결정례)

-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함
- ⊗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청소년보호법」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1 청소년 관련 법령체계



조례

- ④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기본 조례»,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정·시행
- ④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등 제정·시행
- ④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관련하여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조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등 제정·시행
-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④ 한편, 교육감을 지원의 주체로 정한 조례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및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등

Chapter

2

현행법상 청소년 지원제도

2 현행법상 청소년 지원제도

헌법상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의무



- ✓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물론 이러한 기본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음



청소년 관련 개념의 정의

01 청소년

- 개별법상 청소년 개념은 상이함
- 「청소년 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02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

- 청소년육성은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청소년에 대한 교육 보완 등을 포괄
-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으로 구분

2 현행법상 청소년 지원제도

헌법상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의무



- ✓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물론 이러한 기본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음



청소년 관련 개념의 정의

0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상담지원: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지원
- 교육지원: 초·중학교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 재입학, 대안학교 진학,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등에 대한 지원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 자립지원: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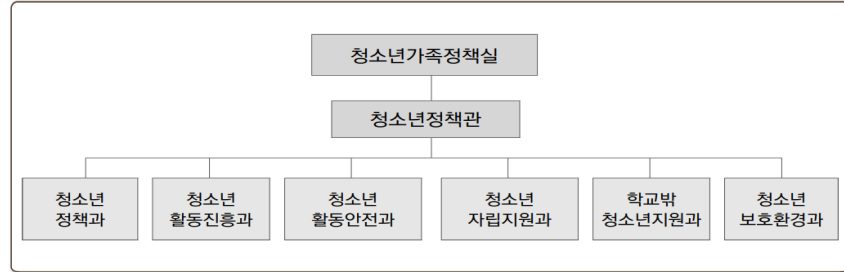
04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활동함

2 현행법상 청소년 지원제도

청소년 지원 주체 : 여성가족부

01 여성가족부 청소년 담당 조직



02 담당 부서별 주요 업무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국제교류,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정책 총괄,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국공립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국립수련원 운영·관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평가 실시 등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 등

2 현행법상 청소년 지원제도

청소년 지원 주체 : 지방자치단체

01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의 육성 또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0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청소년활동 지원과 동일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주체도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다만, 일부 광역지자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의 주체는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현황

구 분	조례명	구 분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 현행법상 청소년 지원제도



청소년 지원 주체 : 지방자치단체

03 청소년단체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으로 구분

-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장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교육감

청소년단체 지원 교육조례 현황

구 분	조례명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현행법상 청소년 지원제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청소년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를 근거로 청소년 육성(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됨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청소년에 대한 지원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방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장도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활동 지원을 포함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교육비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구분되는데, 지방교육재정의 관리주체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조례에서 교육감을 지원주체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됨
- 일부 지자체는 청소년 관련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을 지원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 지원제도의 한계

3 청소년 지원제도의 한계

01 지원주체의 한계

-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교육적 요소를 포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원주체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음
- 교육감이 청소년 지원의 주체로 명시된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
 - 이 경우 중복사무의 문제 발생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7조(학업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2.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준비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청소년 지원제도의 한계

02 재원상 한계

● 일반회계

-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은 여성가족부 총 세출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
-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의 부족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함

● 청소년육성기금

-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경륜사업수익금으로부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이 존재하지 않음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부터 86억원 조달 예정

● 지방청소년육성기금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설치 및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존속기한의 한계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은 향후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한 지원보다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의존될 가능성이 높음

Chapter

4

청소년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4 청소년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1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요구됨
- 2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교육감이 청소년 관련 영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교육조례를 확대하여야 함
 - 조례의 제정 없이 협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은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조례의 제정과 그 확대가 요구됨

감사합니다

김동균 부연구위원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연구 플랫폼



제47회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인 쇄 2022년 9월 19일
발 행 2022년 9월 1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인쇄처 (주)삼일기획 044)866-3011
